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인재원-5348 |
| 보존기간 | 준영구 |
| 결재일자 | 2018.12.21.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방침번호 | 이사장 방침 제 190호 |

| ★차장 | 팀장 | 인재원장 | 경영전략본부장 | 이사장 |
|-----|----|------|---------|-----|
| | | | | |
| 협 조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(안)

2018.

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안

(제안요지)

1. 제정이유

- 가. 국가인권위원회 및 市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경영 도입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및 근거규정 마련
- 나. 인권경영을 위한 일반원칙, 인권경영위원회 운영, 인권침해의 구제, 인권영향평가 등 세부사항의 운영방안 구체화

2. 주요내용

- 가. 인권경영의 일반원칙 ----- (안 제5조 부터 제9조 까지)
 - 임직원 및 공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과 차별금지
 - 인권경영의 선언,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
 - 인권경영 주관부서 설치 및 인권경영담당관의 역할, 인권교육의 실시
- 나. 인권경영위원회 ----- (안 제10조 부터 제14조 까지)
 - 설치 및 기능, 구성, 회의 및 운영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사항
- 다.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----- (안 제15조 부터 제17조 까지)
 - 인권침해 사항의 신고방법 및 상담절차
 - 인권침해 행위의 처리, 시정 및 조치
- 라.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및 공개 ----- (안 제18조 부터 제19조 까지)
 - 기관 및 사업운영의 인권영향평가 실시, 보고서의 작성과 공개

3. 참고사항

- 가. 제안근거 : 인권경영 기본계획 (이사장 방침 제162호, 2018.11.15.)
- 나. 절 차 : 이사장 결재 후 공포·시행
- 다. 기 타 : 주요내용별 세부 실행계획은 별도 방침에 따라 추진

따로붙임 : 인권경영이행지침(안) 1부. 끝.